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50

발의년월일 : 2003년 12월 2일 발 의 자 : 허정민의원외 9인

1. 개정이유

- 푸르름과 녹음이 있는 도로를 통한 녹지축을 형성하여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
-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업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조례의 구성 : 4장 26조 부칙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4조)
 - ·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계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.
-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 - ·가로수 기본계획, 수종 선정, 시민참여 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
- 가로수의 수종선정과 식재위치, 식재기준, 식재시기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6조 ~ 제10조)
- 가로수의 갱신 및 보식, 가지치기·이식과 병충해의 방제, 외과수술, 지형과 토양보호, 주민참여 등 가로수 관리 내용을 규정(안 제12조 ~ 제19조)
-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(안 제20조)
 - ·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관련법에 의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
- ○손궤자 부담금(안 제21조)
 - ·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궤 자에게 손궤자 부담금을 징수
- 원인자 부담금(안 제22조)
 - ·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이식·제거·원상 복구 등 비용은 도로법 규정에 의해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
-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(안 제25조)
- 3. 개정조례안 : 별 첨

- 4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.
- 5. 관계법령
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(제2조)
 - 도로법(제11조, 제67조)
 - 산림조합법(제46조, 제108조)
 - 산림법시행규칙(제2조의 3, 제1항 제3조)
- 6. 관련부서의견 : 별 첨
- 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.
- 8. 사전협의(승인)사항 : 해당없음.
- 9. 기타참고사항
 - 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

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

목포시가로수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목포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 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"가로수"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,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·교통환경 개선,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.
 - 가. 일반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로
 - 나.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
 - 다.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·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
- 2. "갱신" 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수 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.
- 3. "보식"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. 단,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.
- 4. "가로수 지주대"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 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(이하 "지주대"라 한다) 을 말한다.
- 5. "가로수 보호를" 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(이하 "보호를" 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6. "가로수 보호덮개" 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, 공기

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,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(이하 "보호 덮개"라 한다)을 말한다.

- 7. "가로수 보호대"라 함은 정류장·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(이하 "보호대"라 한다)을 말한다.
- 8. "가로수 관수시설" 이라 함은 가로수에 급수 및 시비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(이하 "관수시설" 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제4조 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시장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 - 1.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
 - 2. 가로수 현황 분석
 - 3. 지역별 · 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
 - 4.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
 - 5.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.
 -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가로수조성및관리위 원회 심의 및 주민 공람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.
- 제5조 (가로수조성및관리위원회) ①가로수 기본계획, 수종선정, 시민참여의 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가로수조성및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 -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가로수 조성

- 제6조 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①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 - 1. 목포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
 - 2.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
 - 3. 환경오염 저감,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
 - 4. 지명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

- 5. 서해남부에 자생하는 향토수종
- 6. 생육상태, 병충해와 공해 저항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
- 7.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
-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수형이 정돈 될 것
- 2. 발육이 양호할 것
- 3.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
- 4.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
- 5.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
- 6.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,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 할 수 있을 것
- 7. 지하매설물에 지장이 없고 공해에 강할 것

제7조 (식재 위치) 가로수는 도로의 폭,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호 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.

- 1.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식재한다.
- 2.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 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·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이 상 확보하여야 한다. 단,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3.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.
- 4. 중앙분리대 등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.
- 5. 가로수 굴취·이식 등 사후관리를 위해 보·차도경계선으로부터 보호틀 가장 자리까지의 보도폭은 잔디 또는 브럭형으로 조성하는 등 가로수 식재열의 일 정한 폭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(식재 기준) 가로수는 다음 각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.

1. 교목

가. 식재간격은 6~8m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, 식재

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,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- 나.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, 방음·녹음제공·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·혼식할 수 있다.
- 다.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.
- 라.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. 다만,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·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 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.
- 2.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.
- 3.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,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.
- 4.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화분형에 가로수 를 식재할 수 있다.
- 5. 신규 개설 및 재정비하는 대로변에는 폭 1~1.5m의 녹도를 조성하여야 하며, 기존 도로변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년차별로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9조 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) ①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, 보행인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는 가로수에 의해 차폐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③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이 필요한 경우 가로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 (식재 시기)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 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.
- 제11조 (식재 및 관련시설물 사전 협의) 도로의 신설, 확장, 구조개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와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, 보호대, 보호틀, 보호덮개

및 주변 포장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종, 시설물의 종류, 규격, 시설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는 가로수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장 가로수 관리

제12조 (갱신 및 보식) ①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- 1. 고사 가로수
- 2.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
- 3.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
- 4.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
- 5.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또는 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. 다만,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.
- 제13조 (가지치기·이식) ①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, 통행 공간의 확보, 전기·통신시설물의 안전,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·이식을 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치기·이식을 실시한다.
 - ②가로수 가지치기·이식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·이식을 제 20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 - ③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·이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별지 제1호,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4조 (병해충의 방제)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2.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·갱신·보식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.

- 3.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파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.
- 4.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·보행자·운전자 또는 동·식물에 대한 피해,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,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5.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.
- 6.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시하에 실시하여 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- 제15조 (외과수술 등) ①병해충, 분진, 매연, 화학약품,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, 영양공급, 환토· 객토, 통기구,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 - ②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16조 (지형과 토양 보호)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 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.
 - 1.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·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. 다만,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
 - 나. 보행자,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·성토
 - 다. 도로의 신설ㆍ개량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
 - 라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- 2.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,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.
 - 3.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다져짐, 오염,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

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- 4. 가로수 식재,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 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·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,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.
- 5.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7조 (관리시설물) ①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, 보호틀, 보호덮개, 보호대, 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 관리하다.
 - ②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·보수시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설치한다.
- 제18조 (점검) ①시장은 노선별 · 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, 병충해의 감염여부,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식재량 및 생육상태,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.
 - ③정기점검은 매년 전·후반기 2회 실시한다.
 - ④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·보식·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.
- 제19조 (시민참여 등) ①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
 - 1. 물주기
 - 2. 병해충 발생신고
 - 3.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
 - 4.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
 - 5.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
 - ②시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 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
 - 2.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
 - 3. 보호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
 - 4.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

- ③모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·관리 시책에 가능한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·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,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 (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) ①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업·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,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 - ②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충해방제, 외과수술 등을 대행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3호 관련 별표 1의 제3호 수목피해진단·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.
- 제21조 (손궤자부담금) ①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손궤자에게 손궤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궤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손궤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가로수 손궤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 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 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③손궤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- 제22조 (원인자부담금)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,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 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
 - ③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21조 제3항의 별표 1과 같다.
 - 1. 이식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의 굴취, 운반, 식재비용

- 2. 제거하는 경우는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
- 3. 가지치기, 손궤 등의 경우는 당해 소요비용
- 제23조 (부담금의 강제징수) ①시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
 -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.
 - ③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24조 (관리청간의 협의)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 등

- 제25조 (관리대장) ①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.
 - ②가로수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.

제2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부 담 금 산 정 기 준 (제21조 및 제22조 관련)

- 1. 수목의 이식 또는 원상복구
 - 가.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한 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예치 : 도급공사설계비
 - 나.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 : 도급공사설계비
- 2.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어 제거하는 경우
 - 가.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예치 : 도급공사설계비
 - 나.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 : 도급공사설계비 + 제거비
- 3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징수 : 수목 비의 20% +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
 - ※ 강도의 가지치기 : 수관의 1/3이상
- 4.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징수 : 수목비의 10% + 작업비
- 5. 기타사항
 - 가. 도급공사설계비 징수 : 세외수입
 - ·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(수목 등 재료비 포함) 하여 산정
 - · 수목은 가격정보(조달청)지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격 적용
 - 나. 도급공사설계비 예치 :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